

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 
및 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  
**심 사 보 고 서**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5월 3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1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7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6월 1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( '19.7.1. 시행)으로 ‘장애등급’ 이 폐지되고 ‘장애정도’  
기준이 도입됨에 따라,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 
개정하여 업무혼란을 방지하고자 **일괄정비**<sup>1)</sup>추진
- ※ 기존 6등급 구분에서 2단계( ‘심한 장애’ 와 ‘심하지 않은 장애’ ) 구분으로 변경

### 나. 주요내용

- 마하생태관광지 관람료 면제 대상 변경(안 제1조)
  -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 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계약 대상 변경 등(안 제2조)
  -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 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-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 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1) 각 자치법규의 개정 취지가 같거나 공통된 동기에 근거하여 개정되는 경우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별도의 개정절차로 인한 비경제 및 비능률성 해소

-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 감면 대상 변경(안 제3조)
  - 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 →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등 3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기존 장애인복지법에서 6등급으로 구분하던 “장애등급”이 폐지되고 2단계의 “장애정도”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 
 마하생태관광지 관람료 면제 대상,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계약 대상, 종량제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 감면 대상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.
-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 
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.

제6조제6호 단서 중 “1등급부터 3등급까지” 를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” 으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」의 개정) 「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장애등급이 높은” 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 으로 한다.  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와” 를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” 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의 개정) 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2호 중 “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” 을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” 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 1.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관람료의 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<u>1등급부터 3등급까지</u>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.</p> <p>7. ~ 11. (생략)</p>	<p>제6조(관람료의 면제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u>----- -----.</p> <p>7. ~ 11. (현행과 같음)</p>

### 2. 「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우선계약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하고,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설 관리자가 결정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<u>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</u></p>	<p>제5조(우선계약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장애의 정도가 심한</u> -----</p>



